

3.1.10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13. 08. 06.

개정 2022. 10. 0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“대책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며, 대학입학전형 완료 후 지체없이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입시공정관리 대책 수립
2. 입시관리의 주요과정 감시
3. 입시 사전, 중간, 사후 자체 감사
4. 신·편입학 시험의 절차 감시
5. 입학 사정에 관한 사항 <신설 2022.10.04.>
6. 기타 입시의 공정관리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 <호 번호변경 2022.10.04.>

제4조(업무관장) 대책위원회에 관한 일반업무는 입학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3.08.06.>

제5조(세부사항) 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.